

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우수게임상품 표시(제4조제2항 관련)

1. 우수게임상품 표시의 도안모형



2. 도안표시

우수게임상품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1호의 도안을 표시하면서 "우수게임
상품"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.